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4호 (2020-15)
 발행일 2020. 05. 18.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도입, 이용자의 만족도는?



이상정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복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2019년 7월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자 관점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향후 확대·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이 통합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로, 기존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 주거지원 우선 자립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보완, 확대할 필요가 있음.

01. 들어가며

- ◆ 우리나라의 가정외보호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약 3만 명이며, 이 중 약 2600명의 아동이 「아동복지법」상 기준 연령인 18세를 기점으로 가정외보호체계를 떠나 보호종료아동이 됨.
 - 원가족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은 퇴소와 동시에 가정외보호체계의 물질적·정서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 부적응, 빈곤, 조혼, 노숙, 범죄, 실업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됨.
 - 보호종료아동의 성인기 적응을 돕고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호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함께 보호종료 후의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31.1%)과 주거 문제(24.2%)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과 주거지원(36.3%)으로 나타났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전세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자립정착금과 같은 기존의 주거·경제지원 서비스가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자립지원에서는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주거·경제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정부¹⁾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마련하여 2019년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이 글에서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자 관점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02. 주거지원 통합서비스²⁾

-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에 근거하며, 사업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토교통부, LH,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행 기관임.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는 사업의 기획 및 예산 행정 지원, 사업지침 마련과 같은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부에서 수행함.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는 시·도별 사업 수행 기관 지원, 지원 대상 아동 교육,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평가, 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며, LH가 주거 제공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LH는 대상자 선정, 임대주택 지원, 주거 여건 조성 및 하자 보수, 관리운영비와 예치금 관리 등을 담당함.
 - 각 시·도는 사업 운영 관리, 지방비 확보, 임대주택 확보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민간의 사업 수행 기관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 수행 기관은 서비스 신청 아동 심사를 포함하여 주거지원 절차 및 사업 관리,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함.
-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에게 2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에 의한 사례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자립 실현과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대상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³⁾ 중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보호종료아동이며, 연령과 소득의 제한을 두지 않음.

1)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자립수당은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가정외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서비스의 보완 및 확대가 필요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2)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8). 2019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3) 시범사업 시 보호종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의 LH 보유 임대주택을 2년간 무료⁴⁾로 지원함(예치금 100만 원,⁵⁾ 수도료·전기료 등의 관리비 본인 부담).
- 물품 유지·관리, 물품 지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1호당 50만 원의 주거 환경 조성비를 제공함.⁶⁾
- 아동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사례관리비를 지원하여 교육비나 자격 취득비 같은 아동 자립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의료비 등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사례관리사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이나 유사 업무 활동 관련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호종료아동 30명 기준 1명이 배치됨.
 - 통합사례관리사는 주거 실태 관리, 주거지원 서비스 계약 연장 및 해지 안내, 주택 하자 보수 지원 등의 주거지원 관리 업무를 함.
 - 취업·학업 등의 자립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정기적 방문 및 상담⁷⁾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생활을 점검하며, 필요 서비스를 연계함.
- ◆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이 통합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형태로 정기적 사례관리와 장기적 주거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단편적·일회성 지원에 그친 기존의 주거지원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음.

03.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및 확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이용자 180명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33명이 응답하여 최종 74%의 응답률을 나타냄.
 - 평균 연령 22.7세, 여자 보호종료아동 비율 53.4%이며, 평균 가정외보호 기간 11.5년, 만기퇴소 비율 51.1%로 나타남.
 - 응답자 3명 중 1명(33.1%) 이상은 보호종료 이후 임시 거처 경험이 있었음. 보호종료 후 이사 경험이 1회인 비율은 23.3%, 2회 이상은 24.1%, 3회 이상 19.5%, 4회 이상 7.5%, 5회 이상 13.5%로 나타나 2016년 실태조사⁸⁾와 비교하여 주거 불안정 경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주거 상태 및 주거 환경, 계약 연장 여부,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 및 도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4) 최초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가능, 임대료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의 50% 수준을 적용함. 2020년부터 매월 최대 15만 원의 실비를 지원함.

5)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계약 종료 시 반환함.

6) 2020년부터 적용함.

7) 시범사업 시 분기별 1회 방문 상담, 2020년부터 월 1회 방문, 유선 등의 사례관리 원칙을 적용함.

8) 이사 경험 1회 55.6%, 2회 24.2%, 3회 이상 20.2%임.

- 주거 상태와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거 상태, 주거 구조에 대한 점수는 3.9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만족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주거 환경의 접근성과 안전성 점수가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15.1%, 12%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표 1〉 주거 상태 및 주거 환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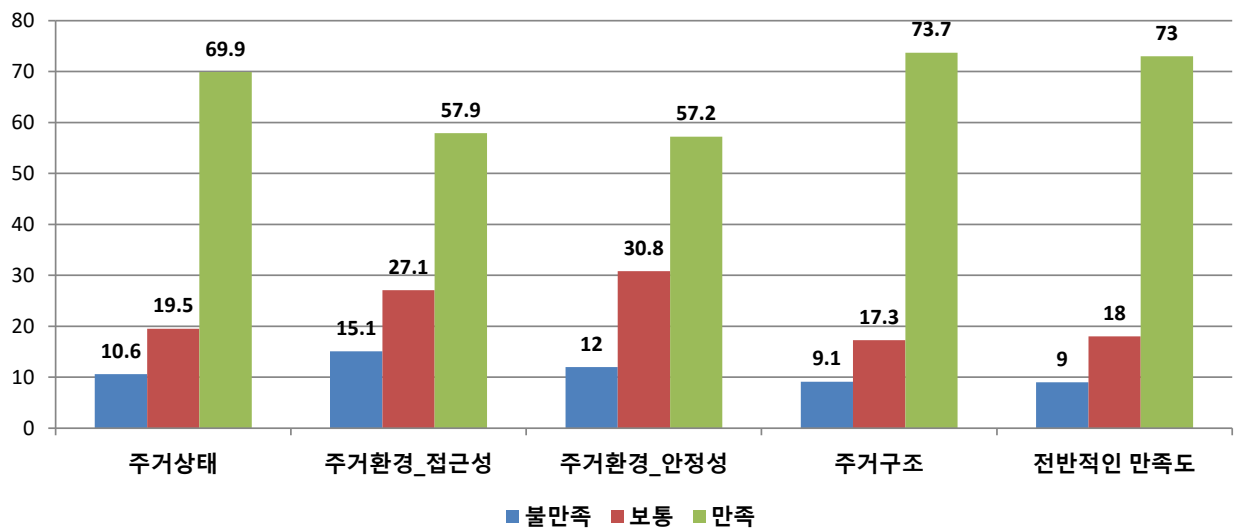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주거 상태	주거 환경_접근성	주거 환경_안전성	주거 구조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	3.9	3.6	3.6	3.9	3.9
표준 편차	1.0	1.1	1.1	1.0	0.9
사례 수(명)	133				

주: 5점 척도.

자료: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p. 141.

〔그림 1〕 주거 상태 및 주거 환경 평가



자료: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p. 141.

- 응답자 중 107명, 80.5%가 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8명 정도는 2년 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주거지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용(74.1%)이었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18.5%), 생활 편의 시설(13.9%), 직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13.0%) 등으로 응답함. 반면, 비연장의 가장 큰 이유로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외하면 직장, 학교 등과의 먼 거리(30.8%), 좋지 않은 주거 상태(26.9%)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계약 연장 또는 비연장 이유

(단위: 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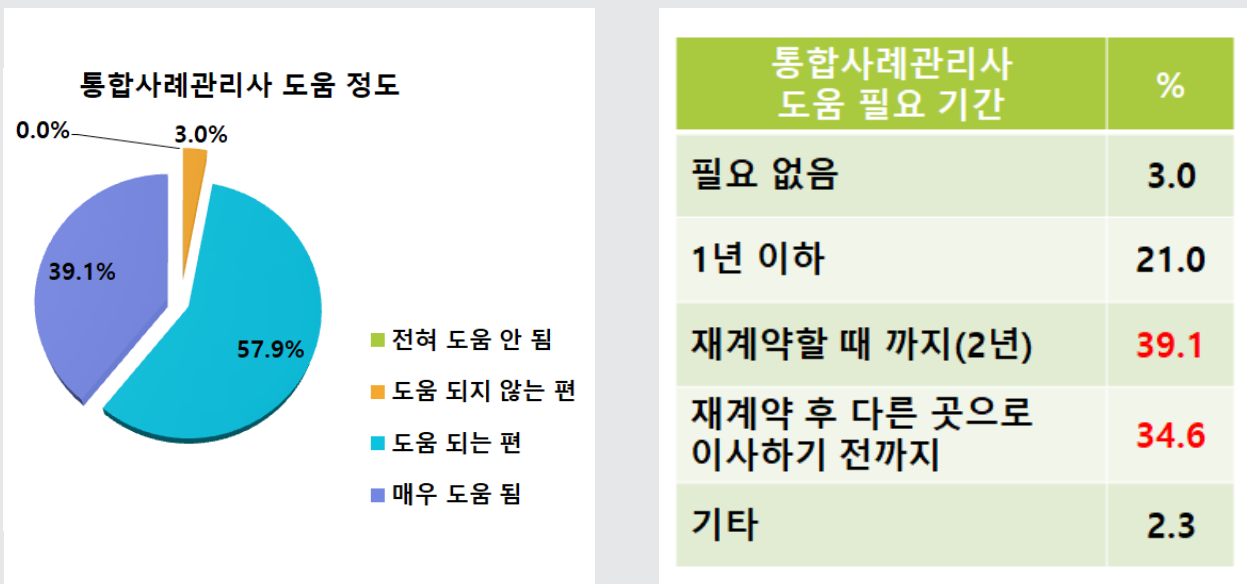
구분	연장(n=107)		비연장(n=26)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냉방, 방음 등의 주거 상태	12	11.1	7	26.9
직장, 학교 등과의 거리	13	13.0	8	30.8
전철, 버스 등 교통 이용 편리성	20	18.5	3	11.5
시장, 마트,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	15	13.9	3	11.5
친구, 가족 등과의 거리	8	7.4	1	3.8
안전성	10	9.3	3	11.5
주거비용(보증금, 관리비 등)	80	74.1	-	-
타 지역 이직, 진학 준비	-	-	7	26.9
기타	5	4.6	7	26.9

주: 중복 응답.

자료: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p. 142.

- 통합사례관리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97%(129명)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73.7%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사로부터 원하는 도움은 주로 자립 서비스나 혜택 관련 정보(73.7%), 자립생활상 어려움 상담(45.1%)으로 주거 상태 관련 문제(33.8%)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 통합사례관리사 관련 평가 및 욕구



자료: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pp. 145-146.

04. 나가며

◆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된 주거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주거지원 우선 자립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보완·확대가 필요함.

- 불안정한 주거는 위기와 탈위기의 반복을 초래하므로 학습, 취업, 진로 등 자립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주거취약계층 정책 대상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 앞서 살펴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제공할 필요가 있음.⁹⁾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학업, 취업 등의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1인 가구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주거 위치 및 주거 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된 주거 제공이 필요함.
 - 이용자의 양적 확대와 욕구를 고려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총원 및 기본 사례 수 조정이 필요함. 또 사례관리 대상자가 성인이고 방문 상담이 필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사례관리사의 연령 및 경력, 성별을 고려한 사례 배정이 필요함.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9).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3).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8). 2019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아동자립지원단.

9) 2019년 시범사업, 7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180호 공급, 2020년도 인천, 충북, 경남 포함 360호로 확대함.